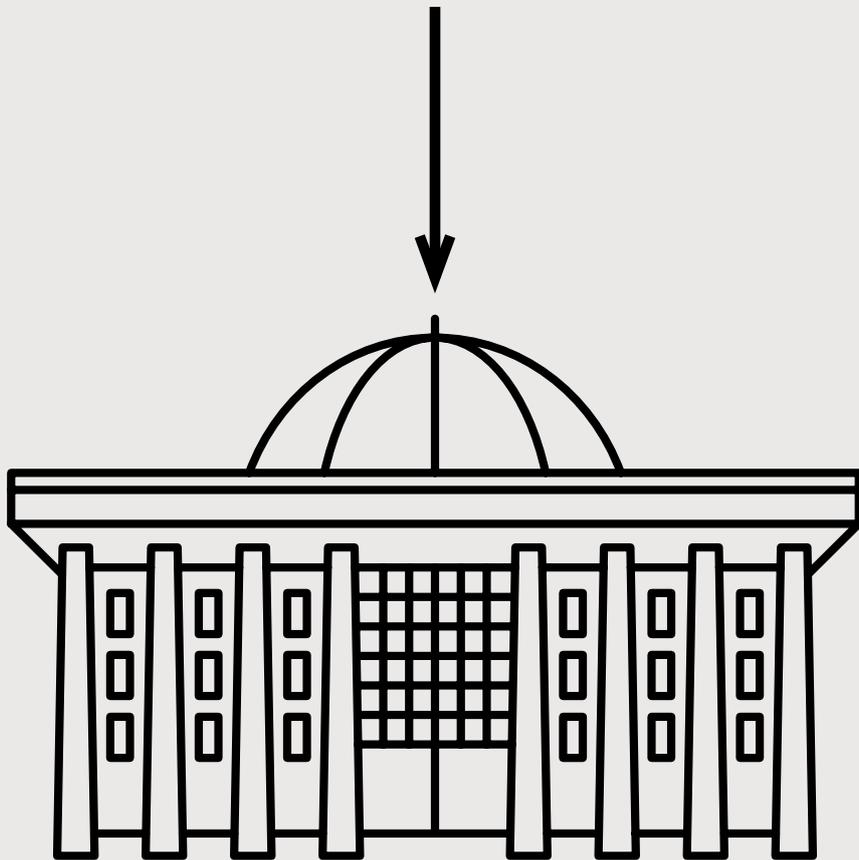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페이지를 넘어  
권리를!**

# 제안 이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성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경로에 대해 70.1%가 ‘인터넷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이라고 답하였으며, 피임 실천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이어져,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하루 평균 3,000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 추산함. 성교육과 피임 실천의 미비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경험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가 빈번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의미함.

반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87.2%가 피임이 국가의료보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93%가 성매개감염 등에 대한 건강검진에 국가 지원을 요구하는 등 국가가 성과 재생산 권리와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라는 사회적 요구는 높음. 그러나 국가는 성과 재생산 권리가 침해되는 현실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가족계획사업 시기에는 인구 조절을 위하여 국민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였음. 현재 국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 역시 저출산 위기 대응이라는 인구 조절 목적에 따라 난임치료, 출산 장려, 보육 지원에 집중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성과 재생산 건강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음.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성과 재생산을 둘러싼 사회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과 재생산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의 패러다임이 인구정책에서 개인의 권리와 건강으로 이동하여야 함. 이는 헌법 제269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7헌바127)에 드러난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기도 함. 성과 재생산 권리와 건강은 인권의 필수적 부분으로서 개인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성평등한 사회 구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이에 개인의 성과 재생산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고 성과 재생산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 교육기관 등의 의무를 정하고자 함.

이 법안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성과 재생산에 대한 결정이 국가의 인구 조절 목적은 물론이고 가족, 시설 등의 필요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 성과 재생산을 둘러싼 차별이 개인의 성과 재생산 권리 실현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며, 개인의 건강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힘으로써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관련 제도 설계에 있어서 차별금지와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함. 나아가, 성과 재생산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의료 체계 등 사회 제도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제1장 총칙

## 조항

## 조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최신의 보건의료서비스에의 접근을 보장하고,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평등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적 권리”란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인 없이 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 성적 정체성, 친밀한 관계의 형성 및 성행위의 여부·상대방·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사할 권리를 말한다.

2. “성적 건강”이란 생식기의 기능과 발달에 있어서 질병, 기능저하, 장애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관에 입각한 성행위를 통해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3. “재생산 권리”란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인 없이 자녀를 가질지 여부와 시기, 방법, 자녀의 수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사할 권리를 말한다.
4. “재생산 건강”이라 함은 생식세포·생식기관의 기능 및 발달에 있어서 질병, 기능저하, 장애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임신 시도·유지·중지, 출산, 양육을 할 수 있을 만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5. “성·재생산건강사업”이란 월경, 피임, 보조생식기술, 임신, 출산, 임신중지, 성매개 감염 등과 관련하여 성·재생산건강을 증진하고 성·재생산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6. “피임시술”이란 피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사, 자궁 내 장치, 피하 이식 장치 삽입 등의 의료적 개입을 말한다.
7. “비가역적 피임시술”이란 난관 절제술, 정관 절제술을 말한다.
8. “보조생식기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한 정자와 난자의 채취 및 배아의 생성, 인공 수정, 체외수정, 생식세포의 냉동 보관 등의 의료적 개입을 말한다.
9. “성매개감염”이란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임질, 클라미디아, 매독, B형 간염 바이러스 등 성행위로 매개되는 감염을 말한다.
10. “통역”이란 외국어통역뿐만 아니라 문자 통역(속기), 수어통역 등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통역서비스를 포함한다.
11. “보건의료”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1호의 “보건의료”를 말한다.
12.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과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의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13.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

## 조항

## 조문

의 의료기관과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14.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15. “보호·복지시설 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2호 마목의 다수인 보호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4조 (권리)

- ① 모든 사람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사람은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 ① 모든 사람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② 누구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혼인 상태, 가족 형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 특징, 병력, 인종, 이주 지위, 직업,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

한다)을 이유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사람이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별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국가는 모든 사람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사람이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 조항

## 조문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 추진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과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  
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성과 재생산에 관한 권리

## 조항

## 조문

제8조  
(자기결정권)

- ① 모든 사람은 성행위, 피임, 임신, 출산, 임신중지, 보조생식기술 사용 등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결정권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② 모든 사람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특징과 관계 없이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특징을 이유로 자율성과 심신의 완전성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 ③ 모든 사람은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인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9조  
(건강권)

모든 사람은 질병 예방, 치료, 근로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을 포함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성·재생산건강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과학 및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최선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절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조항

제10조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

제11조  
(정보접근권 등)

제12조  
(비밀보장)

## 조문

모든 사람은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인 없이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① 모든 사람은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의료인 등은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환자의 장애, 나이, 언어 등을 고려하여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편견을 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에게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에 대하여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은 성과 재생산에 관련된 자신의 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3장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 조항

## 조문

### 제13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 및 조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6조에 따른 성·재생산 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

(종합계획의  
수립)

- 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재생산건강사업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주요 성·재생산건강사업계획 및 그 추진방법
3. 성·재생산건강 관련 보건의료자원 조달 및 관리방안
4.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지원 방안
5.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국내외 정보·통계의 수집 및 번역·관리방안
6. 성·재생산건강 관련 상담인력과 상담기관 확보 및 관리방안
7. 성·재생산건강 보장을 위한 근로 및 휴게환경의 조성
8.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나이, 장애 유형과 특성,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등 성매개감염 여부, 이주 지위 등에 따라 특히 필요한 성·재생산건강사업계획
9. 제3호부터 제6호의 각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차별 실태 조사 및 교육·시정방안
10. 중앙행정기관 간의 성·재생산건강 추진계획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11. 그밖에 모든 사람의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제3호의 ‘성·재생산건강 관련 보건 의료자원 조달 및 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기관 등의 확충과 접근성 확보 방안
2.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 지원, 보급 방안
3.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등 성매개감염인이 성·재생산건강 관련 보건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설 및 자원, 인력 확충 등에 필요한 사항
4. 피임용구와 피임약제의 보급, 정보 제공, 교육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제4호의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 법 제9장 포괄적 성교육의 추진계획 및 그 추진방법(포괄적 성교육 인력 교육, 포괄적 성교육 실태 조사를 포함한다.)
2. 이 법 제10장 성·재생산건강 관련 상담인력

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교육 및 홍보·  
상담기관 등의 확충 및 접근성 확보 방안

- 3. 이 법 제11장 성·재생산건강에 관련된 통역  
등 지원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교  
육 및 홍보
- 4. 이 법 제12장과 관련한 의료인 등에 대한 가  
이드라인의 마련·교육 및 홍보
- 5. 상담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보호·복지시  
설 등의 종사자에 의한 차별 실태 및 시정 방  
안

④ 제1항 제5호의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국  
내외 정보·통계의 수집 및 번역·관리방  
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일터, 교육기관을 포함한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서 성·재생산건강 침해에 관한 실태조  
사, 시정 방안 강구
- 2. 월경, 피임, 보조생식기술, 임신, 출산, 임신중  
지, 성별 확정 및 성별 정정과 관련한 건강, 권  
리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
- 3. 월경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및 초경, 완경  
을 포함한 생애 전반에 있어서 월경의 영향  
에 관한 연구 등

## 조항

## 조문

제15조  
(추진계획의  
수립)

4.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등 성매개감염, 성과 재생산 권리 및 건강 침해와 관련된 의료, 주거, 근로 환경 등과 관련한 정보·통계

-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추진계획 실행을 위한 자원 마련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에 따라 시·도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의료기관 등의 확충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성·재생산건강  
심의위원회)

- ① 성·재생산건강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성·재생산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재생산건강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2. 성·재생산건강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관계 행정각부의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법제처장
  - 2.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⑤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의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장애, 이주 지위 등에 있어서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월경

## 조항

## 조문

제17조  
(월경용품)

- 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선호에 따라 월경용품을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월경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양한 월경용품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월경용품의 가격 안정 지원, 무료 제공, 공공시설 비치 등의 조치로 모든 사람이 제약없이 월경용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소득 수준, 거주 지역, 언어, 성별 등에 따른 제약 없이 제1항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장 피임

## 조항

제18조  
(피임용구와  
피임약제)

## 조문

- 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선호에 따라 피임용구와 피임약제를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피임용구와 피임약제의 사용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여성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국가는 피임용구와 피임약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복용법을 알리고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효과적이고 안전한 피임용구와 피임약제를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피임용구와 피임약제의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구매 제한 해제, 판매처 확대 등의 조치로 모든 사람이 제약 없이 피임용구와 피임약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소득 수준, 거주 지역, 언어, 성별 등에 따른 제약 없이 제1항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 조항

## 조문

### 제19조 (피임시술)

- ① 모든 사람은 임신 예방을 목적으로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피임시술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피임시술의 사용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여성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용 지원을 포함한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의사는 환자에게 비가역적 피임시술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환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숙고한 후 스스로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비가역적 피임시술을 할 수 있다.
- ⑤ 비가역적 피임시술은 의사에 의하여 의료 기관에서 시술되어야 한다.

# 제6장 성별 확정 및 성별 정정

## 조항

## 조문

제20조  
(성별 확정  
및 성별 정정의  
원칙)

- ① 모든 사람은 필요에 따라 성별 확정 및 정정 관련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의사는 의학적 근거와 성·재생산 건강을 기준으로 성별 확정 및 정정 수술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국가의 의무)

- ① 국가는 개인이 결정한 성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성적 정체성에 따른 인격의 자유로운 발달을 보장하며, 그 결정을 이유로 개인의 신체 완전성 및 성·재생산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는 개인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결정을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행정서비스 제공 및 재화의 이용 등에 있어 개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장 보조생식기술

## 조항

## 조문

제22조  
(보조생식기술  
사용의 원칙)

- ① 모든 사람은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인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보조생식기술의 사용 여부·방법 등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보조생식기술의 사용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여성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보조생식기술의 사용 여부, 횟수 등을 제한할 때에는 의학적 근거와 성·재생산 건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생식기술 사용과 관련된 비용 등을 지원할 때에는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  
(정보제공과  
비밀보장)

- ① 보조생식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각각의 보조생식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정확한 의료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보조생식기술을 시술하는 의료인 등은 환자에게 시술의 전과정을 충실히 설명하여야 하며, 환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보조생식기술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의료인 등과 의료기관 등은 보조생식기술 사용과 관련한 의료적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제8장 임신·출산과 임신중지

## 조항

## 조문

### 제24조

(임신 및 임신  
중지에 관한 권리)

- ① 모든 사람은 임신 기간 중 또는 임신중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권리를 가진다.

### 제25조

(임신 기간 중의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한 사람에게 의료 비용, 의료기관에의 이동 지원, 의료기관에서의 통역 지원 등 임신 기간 중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국적, 문화적 배경,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국가는 임신한 사람이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자가 되거나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의자가 되거나 체포·구속되는 경우에 따라 적절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조항

### 제26조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 조문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한 사람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한 비용, 의료기관에 의 이동 지원, 의료기관에서의 통역 지원 등 출산 및 산후조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과 특성, 나이, 문화적 배경, 언어 등을 고려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7조

(임신중지  
정보접근권 등)

- ①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임신중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 상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정보, 상담,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포괄적 성교육 담당 교사, 상담인력, 의료인 등은 임신중지와 관련한 정보, 상담,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특정 개

## 조항

## 조문

제28조  
(임신중지에 관한  
지원)

인 또는 집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중지를 원하는 사람에게 의료 비용, 의료기관에의 이동 지원, 의료기관에서의 통역 지원 등 임신중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국적,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국가는 장애, 나이, 소득 수준, 이주 지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9장 포괄적 성교육

## 조항

## 조문

### 제29조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리)

- ① 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성과 재생산 권리와 건강을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인권에 기반하여 성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하 ‘포괄적 성교육’이라 한다).
- ② 모든 사람은 생애 전반에 걸쳐 필요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30조

(포괄적 성교육의 원칙)

- ① 포괄적 성교육은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며, 성을 인간 발달의 정상적인 일부로서 이해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② 포괄적 성교육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여야 한다.
- ③ 포괄적 성교육은 종교적 교리를 가르치거나 촉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조항

## 조문

제31조  
(포괄적 성교육의  
내용)

④ 포괄적 성교육 교안과 자료는 교육 받을 사람의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언어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포괄적 성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장과 발달, 몸 이미지 및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인식
2.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3.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성적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와 관련 상담기관 등에 대한 정보
4. 피임, 임신중지에 관한 정보 및 성매개감염의 예방을 위한 지식과 정보
5. 성적 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상담·지원 기관 등에 관한 정보
6. 그밖에 성과 재생산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

## 조항

제32조  
(교육기관에서의  
포괄적 성교육 등)

## 조문

-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과정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각 과정별로 아동 및 청소년의 나이에 적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성적 건강 및 성매개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응급피임약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피임약제의 피임효과와 안전성에 관한 정보
  2. 성매개감염의 특성·인간의 몸에 미치는 영향·예방 및 치료약제에 관한 정보
  3. 성매개감염인에 대한 차별, 사회적 낙인
  4. 기타 성적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 ③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장은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생에게 제2항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각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제시된 주제에 대하여 학생의 나이에 적합하고 의료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조항

## 조문

제33조  
(포괄적 성교육  
담당 교사 교육 등)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에 재학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모든 교육과정의 포괄적 성교육 담당 교사를 교육하여야 한다.
- ② 포괄적 성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포괄적 성교육을 함에 있어 이 법 제5조 및 제30조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31조 및 제32조 제2항 각호에 관하여 정확한 최신 연구 결과 및 제도 변화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 제10장 상담과 상담기관

## 조항

## 조문

제34조  
(상담제공)

- ①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정보와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특정한 종류의 상담을 받도록 강제받지 아니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정보와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본조의 상담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성적 정체성, 성행위, 월경, 피임, 임신, 출산, 임신중지 등의 탐색과 결정, 성매개 감염의 예방과 관리 등 생애 전반에 있어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사항과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친밀한 관계 형성에 관한 상담이 포함된다.

## 조항

## 조문

제35조  
(상담에서의  
특별한 고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재생산건강 관련 상담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성별, 장애, 나이, 이주 지위, 문화적 배경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재생산건강 관련 상담기관 및 상담인력,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에 제1항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6조  
(상담인력  
양성·보수교육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재생산 건강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는 상담인력(이하 ‘상담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고, 상담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담인력 양성·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담자에게 이 법 제5조 제2항의 차별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2. 내담자의 성별, 장애 유형과 특성, 나이,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성적 정체성,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성매개감염 여부를 고려한 정보와 이를 반영한 상담 가이드라인
  3. 이 법 제29조부터 제31조에서 규정한 포괄적 성교육

- ② 국가는 모든 사람이 차별이나 사회적 낙인 없이 중립적이고 정확한 성·재생산건강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상담인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상담인력에는 다음 각 호 기관의 종사자 중에서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에 관한 상담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조항

## 조문

### 제37조 (상담인력의 의무)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1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④ 그밖에 상담인력의 범위, 자격요건, 양성·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상담인력은 내담자에게 이 법 제5조 제2항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상담인력은 내담자에게 의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편견 없이 상담하여야 한다.
  - ③ 상담인력은 내담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항

## 조문

제38조  
(상담기관의  
접근성 등)

- ④ 상담인력은 내담자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상담기관, 의료기관 등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원활하게 상담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별 상담기관의 편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상담기관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적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내담자의 장애 유형과 특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언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1장 통역 등 지원인력

## 조항

## 조문

제39조  
(통역 등  
지원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

- ① 국가는 모든 사람이 차별이나 사회적 낙인 없이 독립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성·재생산건강과 권리 관련 통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사람이 차별이나 사회적 낙인 없이 성·재생산건강과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에게 제공하고, 이를 교육하여야 한다.

제40조  
(통역 등  
지원인력의 의무)

- ① 통역 또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은 통역 또는 활동지원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이 법 제5조 제2항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통역 또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은 통역 등이 필요한 사람의 성·재생산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장 의료인 등과 의료기관 등

## 조항

제41조  
(의료인 등에  
대한 교육)

## 조문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교육에 이 법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의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2. 「의료법」 제28조의 중앙회가 「의료법」 제30조에 따라 실시하는 의료인의 보수교육
  3. 「보건의료기본법」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라 실시하는 인력양성 및 보수교육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 ② 제1항 각호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에게 이 법 제5조 제2항의 차별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2. 환자의 성별, 장애 유형과 특성, 나이,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성적 정체성,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등 성매개감염 여부를 고려한 진료·의료행위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라인
  3.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와 방식에 관한 교육

## 조항

## 조문

제42조  
(의료인 등의 의무)

- ③ 제2항 각 호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횟수, 방식, 강사의 자격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의료인 등은 환자에게 이 법 제5조 제2항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의료인 등은 의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편견 없이 환자를 상담·진료하여야 한다.
- ③ 의료인 등이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할 때에는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여야 하며, 제43조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3조  
(환자의 의사결정 지원)

- ① 모든 사람은 본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전부 사용하여도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추정한다.
- ② 의료인 등은 정신적인 장애, 나이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행위 동의·결정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쉬운 표현, 사진, 물품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그 결정에 따른 결과를 포함한다)를 제공한다.
  2. 환자의 반응을 살피며 여러 번 설명하고, 환자가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
  3. 환자가 의료인 등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환자가 신뢰하는 사람이 제1호와 제2호에 관한 의료인 등의 설명을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 ③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를 위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결정하여야 하며, 환자의 권리 및 행동의 자유 제한이 더 적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 등이 환자를 진료·상담할 때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그밖에 환자의 의사결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항

## 조문

제44조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원활하게 의료기관 등에 접근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의료기관 등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장애 유형과 특성, 나이, 이주 지위, 언어,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지원에는 비용지원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대상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확대가 포함된다.

제45조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함에 있어 성과 재생산 건강 보장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장 일터에서의 성·재생산권리의 보장

조항	조문
<p>제46조 (근로자의 성·재생산권리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모든 근로자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가지며, 근로자라는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한다.</li> <li>② 모든 근로자는 업무상의 사유로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침해받지 아니한다.</li> <li>③ 모든 근로자는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업무배제 또는 고용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li> </ul>
<p>제47조 (성·재생산권리 보장 조항 이행 실태 조사와 보고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근로기준법」 제73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장의2에 관한 이행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며, 성·재생산건강심의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li> <li>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규정한 휴가 외에도 피임시술, 보조생식기술, 임신중지, 성별 확정 및 성별 정정 관련 의료서비스 등을 받은 근로자를 위한 휴가 제도를 마련하고, 근로자가 성별에 관계 없이 평</li> </ul>

## 조항

## 조문

### 제48조 (사용자의 의무)

등하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고용상 차별을 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신, 출산, 임신중지, 양육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성별 확정 및 성별 정정 관련 의료서비스 등의 휴가·휴직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과 재생산 권리와 건강이 보장되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과 관련한 사용자의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14장 교육기관에서의 성·재생산권리의 보장

조항	조문
제49조 (학생의 성·재생산권리와 학습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모든 학생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가지며,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한다.</li><li>② 모든 학생은 「교육기본법」 제3조의 학습권을 가지며, 성행위, 임신, 출산, 임신중지, 성별 확정 및 성별 정정 등 성과 재생산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한다.</li></ul>
제50조 (교육기관장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교육기관장은 학생의 성행위, 임신, 출산, 임신중지, 이성 및 동성교제, 성별 표현 등을 금지하는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이를 이유로 학생에게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학생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li><li>② 교육기관장은 월경통, 임신, 출산, 임신중지 등으로 인하여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li></ul>

## 조항

## 조문

제51조  
(고등교육기관장의  
의무 등)

- ③ 교육기관장은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안교육 기관, 지역 영유아 보육시설 정보 등 학습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교육기관장은 학생이 성과 재생산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교직원, 다른 학생, 학부모 등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교육기관장은 학생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증진하고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장의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 ① 고등교육기관장은 학생의 성과 재생산 권리와 건강이 보장되는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관한 고등교육기관장의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장 보호·복지시설 등에서의 성·재생산권리의 보장

조항	조문
<p>제52조 (시설거주자의 성·재생산권리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모든 보호·복지시설 등의 거주자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가지며, 시설거주자라는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한다.</li> <li>② 모든 보호·복지시설 등의 거주자는 시설 입소 및 거주 상황에서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침해받지 아니한다.</li> </ul>
<p>제53조 (보호·복지시설 등의 장의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보호·복지시설 등의 장은 시설거주자의 성행위, 임신, 출산, 임신중지 등을 금지하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이를 이유로 시설거주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시설거주자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li> <li>② 보호·복지시설 등의 장은 시설거주자의 성과 재생산 권리와 건강이 보장되는 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li> <li>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과 관련한 보호·복지시설 등의 장의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li> </ul>

# 참고 해외 법제

## 미국 뉴욕시 성중립 화장실 관련 법안

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 (A5039/S6349)

## 미국 캘리포니아주 포괄적 성교육 법안

California Healthy Youth Act (AB 329)

## 미국 일리노이주 재생산 건강법

Reproductive Health Act (HB 2495)

## 프랑스 공중보건법

Code de la santé publique

## 영국 임신중지법

The Abortion Act 1967

## 영국 의료인 비밀유지

General Medical Council in their Good Medical Practice 2013

## 영국 정신능력법

Mental Capacity Act

## 맨섬 임신중지법

Abortion Reform Act 2019

## 뉴질랜드 임신중지법

Abortion Legislation Act 2020

**호주 빅토리아주 임신중지법**

Victorian Abortion Law Reform Act 2008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임신중지법**

Abortion Law Reform Act 2019

**호주 테즈매니아주 재생산건강법**

Reproductive Health (Access to Terminations) Act 2013

**멕시코시티 주 헌법 (성 및 재생산 권리)**

Constitution of Mexico City

**아르헨티나 성별 정체성법**

Ley de Identidad de Genero 2012



세어는 2015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장애여성공감의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만난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의사들이 2016년에 결성한 “성과 재생산 포럼(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Forum)”을 전신으로 하여 2019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세어는 국내 최초로 성별, 연령, 장애, 인종, 국적, 성적 지향 · 성별 정체성 등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성 건강 전문 상담과 의료지원, 포괄적 성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법과 정책을 연구하는 통합 센터를 지향합니다. 또한 누구도 차별 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고 건강하게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누리며 충분한 정보와 평등한 자원을 바탕으로 서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 비전

- 세어는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고 건강하게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누리며, 충분한 정보와 평등한 자원을 바탕으로 서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사회를 만듭니다.

## 미션

- 세어는 망설임없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든 나눌 수 있는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입니다.

-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상담과 문턱없는 진료를 제공하여 질병, 낙인, 편견, 차별의 사회를 바꿉니다.
- 국내외의 다양한 현장 및 사회운동과 네트워킹하며,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시민 사회의 인식을 고양합니다.
-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필요한 성과 재생산 정보와 지원에 접근할 수 있고, 쉽고, 충분하고, 포괄적인 교육자료를 만들고 제공합니다.
- 현장을 바탕으로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알립니다.

## 가치

- 세어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침해하는 부당한 권력에 맞섭니다.
- 세어는 수평적인 문화와 운영을 지향하며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행복을 중요시 여깁니다.
- 세어는 각자의 삶에서 실패와 기쁨을 경험하며 발견하는 권리를 지지하며, 시혜나 보호가 아니라 원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의 언어를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 세어는 교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정상성에 도전하는 변화를 위해 함께 연대해 나가며,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 조직들과 경험과 전문성을 나눕니다.
- 세어는 현장에 기반함과 동시에 현장을 조직해나갑니다.
- 세어는 우리의 활동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넓은 운동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며, 비서구 아시아 지역으로서의 탈식민적 관점을 견지합니다.
- 세어는 낙인과 동정, 판단과 교정이 아닌 나와 서로의 쾌락 및 욕망을 긍정하며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찾아가도록 응원합니다.
- 세어는 특정한 성과 재생산을 불법화, 범죄화하는 것에 저항하며, 금지가 아닌 권리를 활성화합니다.

## 후원안내

여러분의 후원이 세어의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현금(정기 자동 출금 및 일시 납입) 및 물품, 공간, 자료 등을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단체 구성상 세액 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CMS 등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해 주셔야 하며,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 전화가 필요합니다. 휴대 전화가 없으실 경우 문의를 남겨 주시면 따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 홈페이지 [srhr.kr](http://srhr.kr)
- 이메일 [share.srhr@gmail.com](mailto:share.srhr@gmail.com)

## 일시 후원

국민은행 778801-04-428814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 사업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